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념사업 등에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 추가 등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92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 등의 지속추진 노력의무 추가	3
2. 기념사업 등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 추가	6
3.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11
※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7. 1.
3. 회 부 일 : 2025.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 등의 지속추진 노력의무 추가

개정안은 국가의 의무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11조¹⁾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위령사업(이하 “기념사업등”이라 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념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2025년 예산은 18억 8,500만원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등의 예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¹⁾	내용	사업	예산액
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기림의 날 기념식	200
		청소년작품공모전	100
2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 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국내 전시사업 (위안부 피해 및 전시성폭력·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전시 및 부대행사)	200
		조사·연구 (국내외 자료조사·목록화, 연구서 번역·출간 등)	240
3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교육·홍보 (국·영문 웹진 발간 등)	250
		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및 도서관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사업 등)	456
4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국제 컨퍼런스 (국제학술대회 개최)	16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국제연대위원회·한국위원회 활동 등 지원)	150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 (‘위안부’피해자 관련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121
계			1,885
5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망향의 동산 추모비 제작	185 (‘17년)
		추모공간 정비 (추모비 주변 환경정비)	20 (‘19년)

주 1) 현행법 제11조 제1항 각 호별로 사업을 구분함.

주 2) 2025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다만, 망향의 동산 추모비 제작사업은 2017년도, 추모공간 정비 사업은 2019년 기준임).

자료: 여성가족부

이러한 기념사업등은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등의 지속추진 노력의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의 의무(책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념사업등의 수행에 관한 실체적 규정(제11조)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규정에 대한 노력의무를 국가의 의무(책무) 규정에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기념사업등의 수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념사업등(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지속추진 노력의무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봄.

개정안에 관하여 여성가족부는 국가가 제11조제1항의 기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해야 할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나 예산 축소 등으로 기념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2. 기념사업 등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 추가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항제6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생략)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u> <u>리</u> 7. ----- <u>제6호</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1조 및 제12조²⁾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와 관련한 기념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등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 및 운영비³⁾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240인 중 생존자는 6인이며, 2025년 8월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5세로⁴⁾, 그 가족들이 고령이거나 유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품의 경우 보존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수집·보존·관리·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품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유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⁵⁾

현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3) 개정안 제12조제2항

4) [참고자료] 참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현황)

5) 개정안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품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유품을 모두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됨.

명예를 회복하고 기념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품이 아닌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유품의 관리를 제11조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품의 특성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먼저, 현행법 제4조⁶⁾는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장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내용에 유품정리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어 수집·보존·관리·전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품의 경우,

현행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사적 자료’의 범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있는 유품을 원활히 수집·보존·관리·전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⁷⁾이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재산의 기부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로 「문학진흥법」 제30조의3⁸⁾, 「도서관법」 제47조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¹⁰⁾ 등을 참고할 수 있겠음.

7)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유품은 법정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음.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8) 「문학진흥법」 제30조의3(재산의 기부) ① 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9) 「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관하여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관리사업’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유물·기록물·생활품·사진·서신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품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분류·기록·전시·연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면, 현행법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기념사업 등(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생략)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u>사업경비</u>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 ----- ----- <u>사업경비 및 운영비</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기념사업 등(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2025년 예산은 1억 2,100만원임.

-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위안부’피해자 관련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중 국제공조 지원사업, 조사·교육 지원사업, 문화 창작물 제작 지원사업 수행 주체(총 3개 단체)를 매년 선정

하여 각각 3,600만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¹¹⁾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 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수행 능력을 전제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음¹²⁾.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³⁾은

-
- 11) 예산 1억 2,100만원 중 1억 8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1,300만원은 사업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음. 그 밖에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민간단체 교류 협력사업 및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내역).
-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등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민간 법인이나 단체의 기념사업등의 수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유사 입법례로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7조,¹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¹⁵⁾ 등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5)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현황

< 정부(여성가족부) 등록자 현황(2025. 8. 12. 기준) >

(단위 : 명)

계	생 존	사 망
240	6	234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인정 7명 미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 연령별 현황(2025. 8. 12. 기준) >

(단위 : 명)

계	90~95세	96세 이상	평균연령
6	2	4	95.7

자료: 여성가족부

2. 민간단체 교류 협력사업

○ (사업명) 2025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 (사업내용)

1. 국제공조 지원

- (목적)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국제 연대 및 세계시민 대상 공감대 형성 활동 등을 지원
- (사업내용)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지원

2. 조사·교육 지원

- (목적)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사료를 조사, 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 활동 등을 지원
- (사업내용) 국내외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조사·연구 진행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비용 지원

3. 문화 창작물 제작 지원

- (목적)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작품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문화 창작물 제작 지원
- (사업내용) 국내외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연극, 무용, 시각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창작물 제작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주체: 극단진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총 3개 단체)
- 사업기간: 선정일 ~ 2025. 10. 31.
- 지원형태: 보조금 교부

○ (추진절차)

- 수행단체 공모
 - 공모방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
 - 신청자격: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단체 심사 및 수행단체 선정
 - 선정절차



- 선정심사 실시
 - 방법: 사업 범위 내 심사기준표*에 따라 서면 및 대면 심사
 - * 심사기준: 사업 수행 능력, 사업 내용 구성, 예산 산출의 적절성 등
- 결과통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심사위원 구성 현황) 총 5인(외부 3인, 내부 2인)

- 구성방법: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3.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 내역

< 2023~2025년도 민간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 내역 >

(단위: 천원)

연도	단체명	선정사업명	예산	수행 방식
2023	동아시아평화를위한역사 NGO포럼	아시아 8개국 여성인권과 평화 청년포럼(아시아청년포럼)	36,000	보조
	문화유목민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12주년 특별전 (Do the Right Thing: Women and War)	36,000	
	프로젝트38	전쟁과여성영화제 (WoWFF, Women of War Film Festival)	36,000	
2024	(사)예술공장 두레	소녀, 살아지다	36,000	
	겹겹프로젝트	아시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록과 지원 (2024 중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구술채록)	36,000	
	프로젝트38	제2회 전쟁과여성영화제	36,000	
2025	극단진동	창작 음악극(소녀의 의자)	36,000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가슴에 담은 일본군'위안부'역사	36,000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확산 (전공·계기별 연구 분석과 기록화)	36,000	

자료: 여성가족부